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6일

발 의 자 : 경수현, 고영옥, 권영애, 김경이,
김육영, 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
오중균, 이용진, 이인순, 이일준,
이호건, 임태근, 임현주, 정기혁,
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음. 이에 무단방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무단방치 금지를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부서협의 : 교통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1. 8. ~ 2024. 11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(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(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</u> <u>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<u>제8조</u> (생 략)	<u>제9조</u> (현행 제8조와 같음)